

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
제출인 (매수인)	성명(법인명)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color: red;">정대우</div>	주민등록번호(법인·외국인등록번호)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color: red;">123456-7891234</div>
	주소(법인소재지)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color: red;">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(을지로4가)</div>	(휴대)전화번호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color: red;">010-1800-4844</div>
① 자금 조달계획	자기 자금	
	② 금융기관 예금액 <small>본인명의로 예금(적금 등) 원</small>	③ 주식·채권 매각대금 <small>본인명의 주식·채권 및 각종 유가증권 매각금 등 원</small>
	④ 증여·상속 등 <small>증여 또는 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 원</small>	⑤ 현금 등 기타 <small>현금 보유 자금 및 ②, ③, ④, ⑥ 에 포함되지 않는 자금 원</small>
	[V]부부 []직계존비속 (관계:) []기타 (관계:)	[]보유 현금 해당 내용 표시 []기타 자산 (종류:)
	⑥ 부동산 처분대금 등 <small>본인 소유 부동산의 처분대금 원</small>	⑦ 소계 <div style="text-align: right; color: red;">②+③+④+⑤+⑥ 합계금액 원</div>
	⑧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	
	<small>각종 대출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합계 원</small>	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금액 원 신용대출 신용대출금액 원 기타대출 그 외 대출 원 (대출종류:)
	기존 주택 보유 여부 (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만 기재) []미보유 [V]보유 (1 건)	
	⑨ 임대보증금 등 <small>취득주택의 신규 임대차 계약 자금 원</small>	⑩ 회사지원금·사채 등 <small>금융기관 이외의 법인, 개인사업자 등으로부터 차입금 원</small>
	⑪ 그 밖의 차입금 <small>⑧, ⑨, ⑩ 에 포함되지 않는 차입금 원</small>	⑫ 소계 <div style="text-align: right; color: red;">⑧+⑨+⑩+⑪ 합계금액 원</div>
[]부부 [V]직계존비속 (관계: 모) []기타 (관계:)	<div style="text-align: right; color: red;">⑧+⑨+⑩+⑪ 합계금액 원</div>	
⑬ 합계	<div style="text-align: right; color: red;">⑦+⑫ 합계금액(공급금액 총액과 동일한 금액) 원</div>	
⑭ 입주 계획 <small>해당 내용 선택 표시</small>	[]본인입주 []본인 외 가족입주 (입주 예정 시기: 2022년 7월)	[]임대 (전·월세)
		[]기타 (재건축 등)
⑮ 조달자금 지급계획	총 거래금액 공급금액 총액 원	
	⑯ 계좌이체 등 금액	원
	⑰ 보증금·대출 승계 등 금액	원
	⑱ 현금지급 등 기타금액	원
	현금 등 기타방식 지급 사유 ()	
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제1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합니다.

날짜 기재 금지(부동산실거래신고 시 작성)

제출인 도장 날인 금지(계약서 작성 시 인감 도장 날인)

팔달구청장 귀하

유의사항

1. 제출하신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어, 신고내역 조사 및 관련 세법에 따른 조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 됩니다.
2.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(증빙자료 제출대상인 경우 증빙자료 포함)를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3. 이 서식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접수 전에는 제출이 불가하오니 별도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여부를 신고서 제출자 또는 신고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작성방법

1. ① "자금조달계획"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을 적고, 매수인이 다수인 경우 각 매수인별로 작성하여야 하며, 각 매수인별 금액을 합산한 총 금액과 거래신고된 주택거래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.
2. ② ~ ⑥에는 자기자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되지 않게 적습니다.
3. ② "금융기관 예금액"에는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본인명의의 예금(적금 등)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습니다.
4. ③ "주식·채권 매각대금"에는 본인 명의의 주식·채권 및 각종 유가증권 매각 등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습니다.
5. ④ "증여·상속 등"에는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 받거나 또는 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 등을 적고, 자금을 제공한 자와의 관계를 해당 난에 √ 표시를 하고 부부 이외의 경우 해당 관계를 적습니다.
6. ⑤ "현금 등 기타"에는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 및 자기자금 중 타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 본인 자산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(금융기관 예금액 이외의 각종 금융상품 및 간접투자상품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포함)을 적고, 해당 자금이 보유 현금일 경우 해당 난에 √ 표시를 하고, 현금이 아닌 경우 기타 자산에 해당 난에 √ 표시 및 자산의 종류를 적습니다.
7. ⑥ "부동산 처분대금 등"에는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, 기존 임대보증금 회수 등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또는 재건축, 재개발시 발생한 종전 부동산 권리가액 등을 적습니다.
8. ⑦ "소계"에는 ② ~ ⑥의 합계액을 적습니다.
9. ⑧ ~ ⑪에는 자기자금을 제외한 차입금 등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되지 않게 적습니다.
10. ⑧ "금융기관 대출액 합계"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각종 대출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또는 매도인의 대출금 승계 자금을 적고, 주택담보대출·신용대출인 경우 각 해당 난에 대출액을 적으며, 그 외 기타대출인 경우 대출액 및 대출종류를 적습니다. 또한 주택담보 대출액이 있는 경우 아래 "기존 주택 보유 여부"의 해당 난에 √ 표시를 합니다. 이 경우 기존 주택은 신고하려는 거래계약 대상인 주택은 제외하고,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하며, "기존 주택 보유 여부" 중 "보유"에 √ 표시를 한 경우에는 기존 주택 보유 수(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건별로 계산합니다)를 적습니다.
11. ⑨ "임대보증금 등"에는 취득주택의 신규 임대차 계약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한 임대차 계약의 임대보증금 등 임대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 등을 적습니다.
12. ⑩ "회사지원금·사채 등"에는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, 개인사업자 등으로부터 차입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습니다.
13. ⑪ "그 밖의 차입금"에는 ⑧ ~ ⑩에 포함되지 않는 차입금 등을 적고, 자금을 제공한 자와의 관계를 해당 난에 √ 표시를 하고 부부 이외의 경우 해당 관계를 적습니다.
14. ⑫에는 ⑧ ~ ⑪의 합계액을, ⑬에는 ⑦과 ⑫의 합계액을 적습니다.
15. ⑭ "입주 계획"에는 해당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이후 첫 번째 입주자 기준(다세대, 다가구 등 2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항목별 중복하여 적습니다)으로 적으며, "본인입주"란 매수자 및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 함께 입주하는 경우를, "본인 외 가족입주"란 매수자와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된 가족이 입주하는 경우를 말하며, 이 경우에는 입주 예정 시기 연월을 적습니다. 또한 재건축 추진 또는 멸실 후 신축 등 해당 주택에 입주 또는 임대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"기타"에 √ 표시를 합니다.
16. ⑯ "조달자금 지급계획"에는 조달한 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방식 등을 각 항목별로 적습니다.
17. ⑯ "계좌이체 등 금액"에는 금융기관 계좌이체로 지급하는 금액 등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금지급 확인이 가능한 금액을 적습니다.
18. ⑰ "보증금·대출 승계 등 금액"에는 종전 임대차계약 보증금 또는 대출금 승계 등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한 자금의 금액을 적습니다.
19. ⑱ "현금지급 등 기타금액"에는 ⑯, ⑰ 이외 현금지급 등 기타 방식으로 지급한 금액을 적고 계좌이체 등이 아닌 현금(수표) 등의 기타 방식으로 지급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합니다.